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 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자동차 등록증에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

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#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						( 17
자 동 차 등 록 증							
제	호	최초등록일 : 년 월 일					
① 자동차등록번호		② 차 종			③ 용 도		
④ 차 명		⑤ 형식 및 제작연월					
⑥ 차 대 번 호			① 원동기형식				
⑧ 사 용 본 거 지							
소유자	⑨ 성명(명칭)		⑩ 주민(법인)등록 번호				
	① 주 소			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※ 유의사항 :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①번란의 '원동기형식'은 '구동전동기형식'을 말합니다.

년 월 일

등록관청명

적 인

1. 제 원			
⑫ 제원관리번호			
(형식승인번호)	)		
⑬ 길이	mm	14 너비	mm
①5 높이	mm	16 총중량	kg
⑰ 배기량	СС	(18) 정격출력	Ps/rpm
⑲ 승차정원	명	② 최대적재량	kg
② 기통수	기통	② 연료의 종류	(연비: km/L)
② 구동축전지 셀의 제조사		② 구동축전 지 셀의 형태	
② 구동축전지 셀의 주요 원료			

유의사항 :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"정격출력(ps/rpm)"은 "구동전동기 정격출력/회전수(\(\mathbb{W}\rpm\)"를, "기통수/배기량(\(\omega)\)"은 "구동축전지 정격전압/용량(\(\mathbb{V}\rho\)"을 말하며, "연료소비율(\(\mathbb{km}\left)\)"은 "연료소비율(\(\mathbb{km}\rho\)"을 말합니다.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"정격출력(\(\omega)\)"은 "구동전동기 정격출력/회전수(\(\mathbb{W}\rpm\)"를, "기통수/배기량(\(\omega)\)"은 "연료전지 최고출력(\(\mathbb{W}\rho\)"을 말하며, "연료소비율(\(\mathbb{km}\left\left\rho\)"은 연료소비율(\(\mathbb{km}\rho\)"을 말하며, "연료소비율(\(\mathbb{km}\rho\)"은 연료소비율(\(\mathbb{km}\rho\)"을 말하니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. ②~②는 구동축전지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

#### 2.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

  26 구분	> 구분 □ ♡ 번호판발급일 │ ※ 봉인일	☼ 봉인일	🔉 발급대행
-			자확인

### 3. 저당권등록사실(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 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)

③) 구분(설정 또는 말소)	③1 일 자

4. 검사유효기간						
		@ 7JJJJJ		₩ 74 H÷U	₩ 74.1	
•	③ 연월일	③ 검사시 	<b>孫</b> 妙리		☞ 검사	
부터	까지	행장소		임지확인	<de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del>	
주의사항 : ②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						
비고						
- 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가치세 제외):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m² 또는 백상지 80g/m²]

####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

- 주소·성명 등의 변경등록(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. 「자동차등록령」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「주민등 록법」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, 변 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)
  -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 소·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(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 료).
- 튜닝승인
  -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.
- 이전등록
  -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 청을 해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).
    -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내,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  -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
- 말소등록
  - 사유(폐차요청 등)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 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 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
  -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 역 또는 벌금).

### 자동차등록증

○○시・도

5. 변경등록사항					
⊗ 성명	③ 주소	④ 등록일자	④ 확인		

6. 튜닝사항				
<b>②</b> 내용	43 검사일자	④ 검사책임자확 인		
7. 기타				
45 내 용	46 일자	47 확인		

③ 구분(설정 또는 말소)

- 00000	117 [27] 71	12-12/17]	716 2024.	0. 10.2					(앞쪽)
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									
제 호			최조	· · 등록일 :	년	월	일		
① 자동차등	록번호			② 차 종				③ 용 도	
④ 차 명				⑤ 형식 및 제	세작연월		'		
⑥ 차 대 번	호			⑦ 원동기형	식				
⑧ 사 용 본	거 지								
9 : 소유자	성명(명칭)			⑩ 주민(법인 번호	<u>l</u> )등록				
	주 소		,		'				
「자동치	·관리법」	제8조에 따리	라 위와 같(	이 등록하였	음을 증명	령합니다.			
			년	월	일				
							등록관	처며	ગુ
	한 운행구역	안에서만 운행	할 수 있습니!	다.					
ㅇ 지정된 운행 이하의 과태	구역 외의 장3  료가 부과될		사공사들 군( 	갱안 사남에게는	- '사능사	판디멉」 세	84소세4양/	제15오의2에	따라 100만원
1. 제 원				4. 검사	 유효기간				
⑫ 제원관리번 <u>:</u> (형식승인번:				③ 연월일	③ 연월일	③ 검사시	③ 주행거	③ 검시책	③ 검사
③ 길이	mm	(4) 너비	mm	부터 - -	까지	행장소	리	임자확인	구분
15 높이	mm	16 총중량	kg						
⑦ 축전지용량 	AN 명	<ul><li>⑧ 정격출력</li><li>② 최대적재량</li></ul>	kW/h						
<ul><li>⑨ 승차 정원</li><li>② 축전지정격전</li></ul>	V	② 1회 충전	kg						
압 ② 축전지 셀	V	주행거리 ②4 축전지	km						
의 제조사 ② 축전지 셀		셀의 형태							
의 주요 원료									
2. 등록번호판		릉인 	₩ HFJ LI ŞI						
②6 구분 일 일	번호판발급	≫ 봉인일	② 발급대행 자확인						
				-					
3. 저당권등록 록원부(을)를	류사실(저당권 열람ㆍ확인	실등록의 내용 하시기 바랍니	은 자동차등 니다)	1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120g/m² 또는 백상지 80g/m²]

주의사항 : ②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

- 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가치세제외):

비고

③1 일자

###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

- 주소·성명 등의 변경등록(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. 「자동차등록령」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「주민등록 법」에 따른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, 변경등 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)
  -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 ·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(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튜닝승인
  -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 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.
- 이전등록
  -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 을 해야 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).
    -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내,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  -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말소등록
  - 사유(폐차요청 등)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 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 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.
-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
  -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 제처리대상이 됩니다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.

#### 자동차등록증

OO시 · 도

6. 튜닝사항

5. 변경등록사항					
③ 주소	④ 등록일자	④ 확인			

<b>4</b> ② 내용	43 검사일자	⑷ 검사책임자확인
7. 기타		
45 내 용	46 일자	④ 확인